한국연구재단 지원 계속과제의 연구수당 가이드라인 Q&A

본문 가이드라인의 추가 문의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nrf.re.kr)의 사업별 담당자 전화번호 참고

□ 가이드라인 Q&A

1. 연구수당 기준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2022년 3월 기준 아래 유형에 포함되는 과제입니다.

① 최초 협약 당시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2021. 6.30.이전 협약체결 계속과제

② 2021. 6.30.이전에 연차협약 등으로 연구수당이 증액된 과제

③ 2021. 1. 1.이전 협약체결된 과제 중 정산대상기간 내 참여연구자는 2명 이상이나, 혁신법 시행(2021.1.1.) 후 참여연구자 1명으로 수행된 과제

2. 최초 협약 당시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은 계속과제는 연구수당을 새롭게 계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항목별 연구비는 계상했으나 연구수당을 0원으로 입력했던 과제도 새롭게 계상이 가능한지요?

- 최초 협약 체결 당시 총연구기간의 연차별 연구수당을 **기 계상한 과제(0원으로 계상한 과제 포함)는 신규입력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은 과제란 협약체결 당시에 항목별 연구비 등 연구비 자체를 입력(계상)하지 않은 과제입니다.

3. 2021.6.30. 이전에 최초협약이 체결되고 **2022.1.1.에 연차협약 등으로 연구수당 계상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가요?

-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1.6.30. 이전에 연차협약 등으로 연구수당 계상액을 증액한 경우만** 협약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4. 2021.6.30. 이전에 연차계획서 제출로 연구수당을 증액하였지만, 최초 협약 당시 기준으로 20%를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가요?

- 그렇습니다. **연차보고서 제출도 연차협약 등으로 연구수당을 증액**한 경우로 간주하여, **증액된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매년 연차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2021.6.30. 이후 체결이라면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1.6.30.이전에 연차협약 등으로 연구수당이 증액되었지만, **2022년 3월 전에 과제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가요?

- 그렇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혁신법 시행 후 매뉴얼 발간 전까지 혁신법 시행 과도기에서의 연구수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 6.30. 이전에 연차 협약 등으로 증액된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본문 [가이드라인 경과조치 ❶]의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계속과제만 적용 대상이므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참고 기초연구사업 연구수당 인정기준 상세 안내

□ 기초연구사업 목록

부처	구분	사업명
과기정통부	개인연구	리더연구, 중견연구, 우수신진연구, 기본연구, 생애첫연구, 재도약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집단연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교육부	학문후속세대지원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후 국외연수
	대학연구기반 구축	대학중점연구소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학문균형발전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학제간융합연구
	기본연구(교육부)	기본연구(교육부)

*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연구수당 인정기준

○ **(공통) 2021.6.30 이전에 연차협약 등으로** 인해 **증액된 연구수당 계상액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 가이드라인의 적용방법 예시를 참조

□ 연구수당 신규계상 가능 과제 [가이드라인 경과조치 ❶ 관련]

○ **(과기정통부 개인연구**(리더연구 제외)) 최초 협약 당시 1~5차년도의 항목별 연구비만 입력 가능하여 **6차년도 항목별 연구비를 입력하지 못했던 과제**(6차년도 자체가 없는 과제는 해당사항 없음)

구분 (혁신법 시행 이후)	인정기준	비고
2022년 6차년도 과제 (2017년 선정)	2022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연구수당	기 입력완료
2023년 6차년도 과제 (2018년 선정)	2023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받을 예정이었던 6차년도 항목별 연구비 정보를 경과조치 적용기간 내에 제출받아 반영* ※ 2022년 5차년도는 협약당시 입력한 연구수당으로 인정	**신규입력 대상***

*** 시스템 반영 등의 이후에 사업별 대상과제 연구책임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과기정통부 리더연구)** 최초 협약 당시 1단계의 항목별 연구비만 입력하여 **2~3단계 항목별 연구비를 입력하지 못했던 과제**(1단계로만 이루어진 과제는 해당사항 없음)

구분	인정기준	비고
2020년 이후 선정과제	2020년도 협약용계획서 제출 시 입력한 연구수당	기 입력완료
2017년~2019년 선정과제	다음 단계의 단계보고서 제출 시 입력받을 예정이었던 차기 단계 항목별 연구비 정보를 경과조치 적용기간 내에 제출받아 반영 ※ 현 단계는 2022년 협약용계획서 상의 금액으로 인정	**신규입력 대상***
2012년~2016년 선정과제 (마지막 단계과제)	2022년도 협약용계획서 또는 수정·보완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연구수당	**2022년 제출사항 확인 및 재접수 대상****

*** 시스템 반영 등의 이후에 사업별 대상과제 연구책임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회계연도 일치로 인해 마지막 단계, 마지막 연도 잔여기간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구비를 입력하지 않은 과제**

○ **(과기정통부 집단연구) 별도 가능과제 없음**

- 인정기준 : 선정 당시 협약용계획서 제출 시 입력한 연구수당

※ 단, 2021년까지 연차 또는 단계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연구수당은 가이드라인 경과조치 ❷에 의해 인정

○ **(교육부 공통)** 회계연도 일치 정책에 따라 협약당시 **잔여 연구기간(마지막 연차)의 항목별 연구비가 입력 불가능하여 입력하지 못했던 과제**

- 대상과제는 2017년~2020년에 선정되어 2023년 이후에도 지원되는 계속과제 등으로 세부사항은 사업별로 별도 안내* 예정

*** 시스템 반영 등의 이후에 사업별 대상과제 연구책임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연구수당 신규계상 가능과제 예시 >

▷ 1~10차년도 항목별 연구비는 입력을 하였으나 회계연도 일치 정책에 따라 잔여 연구기간(11차년도) 항목별 연구비를 입력하지 못했던 과제)

구분	선정연도 (n)	1차년도 (n+1)	2차년도 (n+2)	… …	10차년도 (n+10)	11차년도 (n+11)
항목별 연구비	입력	입력	입력	…	입력	미입력
						연구수당 신규계상 대상

□ 연구수당 인정기준 및 예시 (가이드라인 경과조치 ❷ 관련)

○ 2021.6.30. 이전에 연차협약 등으로 인해 증액한 연구수당 계상액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연구수당 인정기준〉

구분	사업연도							
선정시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17년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1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2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3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4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5차년도 연구수당	(해당 시)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6차년도 연구수당**	–	–
2018년	–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1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2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입력한 3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4차년도 연구수당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5차년도 연구수당	(해당 시)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6차년도 연구수당**	–
2019년	–	–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1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2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3차년도 연구수당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4차년도 연구수당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5차년도 연구수당	–
2020년 3월 2020년 6월	–	–	–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1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2차년도 연구수당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3차년도 연구수당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4차년도 연구수당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5차년도 연구수당
2020년 9월	–	–	–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1차년도 연구수당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2차년도 연구수당***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3차년도 연구수당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4차년도 연구수당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5차년도 연구수당
2021년	–	–	–	–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1차년도 연구수당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2차년도 연구수당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3차년도 연구수당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4차년도 연구수당
2022년	–	–	–	–	–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1차년도 연구수당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2차년도 연구수당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3차년도 연구수당

* 2021.6.30.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과제에 한해 협약당시가 아닌 2021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시 계상한 연구수당으로 인정

** 협약당시 1~5차년도 항목별 연구비만 입력 가능하였으므로, 6차년도는 해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금액을 협약 당시 계상한 금액으로 인정(2018년 선정과제의 6차년도(2023년) 항목별 연구비는 2022년 상반기 중에 입력 받을 예정)

*** 2021.6.30.후에 2021년도 연차보고서를 접수하였으므로 2021년도 연차보고서 제출당시 계상한 연구수당이 아닌 협약 당시 계상한 연구수당 금액으로 인정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집단연구) 연구수당 인정기준〉

구분	사업연도							
선정 시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16년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1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2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3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4차년도 연구수당	**단계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5차년도 연구수당	**단계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6차년도 연구수당	**1단계 협약당시** 입력한 7차년도 연구수당	–
2017년	–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1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2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입력한 3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4차년도 연구수당	**단계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5차년도 연구수당	**1단계 협약당시** 입력한 6차년도 연구수당	**1단계 협약당시** 입력한 7차년도 연구수당
2018년	–	–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1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2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3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4차년도 연구수당	**1단계 협약당시** 입력한 5차년도 연구수당	**1단계 협약당시** 입력한 6차년도 연구수당
2019년	–	–	–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1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2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3차년도 연구수당	**1단계 협약당시** 입력한 4차년도 연구수당	**1단계 협약당시** 입력한 5차년도 연구수당
2020년	–	–	–	–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1차년도 연구수당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입력한 2차년도 연구수당	**1단계 협약당시** 입력한 3차년도 연구수당	**1단계 협약당시** 입력한 4차년도 연구수당
2021년	–	–	–	–	–	**최초 협약당시** 입력한 1차년도 연구수당	**1단계 협약당시** 입력한 2차년도 연구수당	**1단계 협약당시** 입력한 3차년도 연구수당
2022년	–	–	–	–	–	–	**1단계 협약당시** 입력한 1차년도 연구수당	**1단계 협약당시** 입력한 2차년도 연구수당

※ 2023년 이후는 1단계 협약당시 입력한 연구수당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2019년도 선정과제의 연구수당 인정예시〉

○ 2021.6.30. 이전에 연차(다년)협약 등으로 연구수당을 증액계상한 경우, 증액된 연구수당 계상액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으로 간주

– 2019년~2021년은 상기 기준에 해당하므로 연차별로 계상한 금액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으로 인정하되, 2022년부터는 최초 협약 체결 당시 입력한 해당 연차의 연구수당으로 인정

구분		사업연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협약구분		연차협약 **(과제선정)**	**다년협약**(2020년에 다년협약 체결)				–
정산		정산완료	**정산 미완료**				
협약 및 보고서 제출당시 항목별 연구비 입력 대상		총 연구기간	해당연차	해당연차	해당연차	해당연차	–
수정인건비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연구수당 계상액	최초협약 시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천만원**
	다년협약 시	–	**400만원**	–	–	–	–
	협약 없이 연차보고서 접수	–	–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
연구수당 인정금액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천4백만원**

* 2021.6.30. 이전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과제기준(만약 2021.6.30.후에 2021년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과제라면 2021년도 연구수당은 400만원이 아닌 최초 협약 체결 당시 해당 연차에 계상한 200만원으로 인정)